

第128回(定例會)

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本會議會議錄

第3號(附錄)

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

目 次

1. 補充質問 答辯書	1面
-------------------	----

보충질문답변서

질문의원	질 문	답 변	해당부서
조기태의원	○공무원 불법집단행위 관련 징계대상자의 징계요구현황 및 징계일정에 대하여 답변 요망	○행정자치부로부터 징계 요구받은 우리 구 소속 공무원 2명은 모두 경징계대상입니다. ○징계일정은 유사한 상황에 있는 타구의 진행사항을 참고하여 조치할 예정으로 인사위원회 개최 등 관련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.	감사담당관
	○종로구 공무원노조를 적극 지원하여 줄 것에 대하여 요청하셨습니다.	○공무원노동조합은 현행법상 설립할 수 없으며 2002년 10월 종로구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. ○직장협의회는 직장내의 근무환경개선, 업무능률향상, 고충처리와 구정발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구청장과 직장협의회 대표간 상호협의를 통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. ○금년 11월 26일 직장협의회 회의 요구 사항인 동절기 직원 근무복 지급 등 9개 항목에 대하여 합의하여 시행하고 있으며, ○앞으로도 직장협의회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구정발전과 직원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	총 무 과

질문의원	질 문	답 변	해당부서
조기태의원	<p>○대북교류는 인도적 교류에 따라서 확대해야 하며, 민간차원의 교류도 증대되어야 하고 또한 대북교류는 민족문제의 차원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고 질문 주셨습니다.</p>	<p>○남북 기초자치단체간 남북교류 증진은 사전에 남북교류협력사업심사위원회에서 교류협력사업 추진내용을 기초로 심사하여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(관련공문 참조)</p> <p>○이와 관련하여 정부간 실제 교류사업이 어느 정도 성숙된 후 추진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.</p> <p>○그러나 최근에 남북간 여러 형태의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으로서</p> <p>○필요한 경우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가장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교류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</p>	총무과
	<p>○2001년 9월 이후 부암동으로 중입대상포함 94세대, 고입대상포함 136세대 총 230세대가 전입하여 왔는바 위장전입으로 파악된 7세대는 수치상 너무 저조한데 재조사할 용의는?</p>	<p>○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30세대는 2001년 9월 이후 부암동으로 전입하여 온 중·고 입학대상자가 포함된 세대이며</p> <p>○금번에 답변드린 같은 지역 위장전입자 7세대는 2001년 9월 이후 전입하여 온 세대 중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조사 의뢰하여 온 93세대를 대상으로 정밀 현장조사한 결과입니다.</p> <p>○앞으로 해당지역 통반장과 공무원이 합동으로 나머지 잔여세대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</p>	자치행정과
	<p>○옥인동 47번지 일대 및 누하동 8번지 일대 재개발을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북뉴타운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?</p>	<p>○재개발은 원칙적으로 서울시 주택재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에 한하여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위 구역은 현재 서울시 기본계획에 미포함된 지역으로 우선 2003년도 중 서울시 주택재개발기본계획 용역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진달하겠습니다.</p>	도시계획과

질문의원	질 문	답 변	해당부서
조기태의원		<p>○강북뉴타운 계획은 위 재개발사업과는 별개로 추진되는 사업이나 앞으로 시행할 용역결과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으로 적정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뉴타운 개발계획 대상지 선정시 포함되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.</p>	도시계획과
심재환의원	<p>○연화정사 건축허가취소처분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본 공사를 위한 것이 아닌지?</p>	<p>○연화정사 측에서 건축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의 판결선고 확정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위 처분의 집행으로 공사가 계속 중지된다면 다시 장기간의 공사 지연으로 이미 시공한 흙막이시설 및 굴토 내지 절토부분이 붕괴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럴 경우에는 신청인은 물론 인근 주민에게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되며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원고측이 주장하며 집행정지 신청한 내용에 대하여</p> <p>○법원이 흙막이시설 및 굴토부분이 붕괴로 인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이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, 건축허가취소처분의 효력을 2003년 1월 30일까지 정지한 것으로,</p> <p>○동 집행정지 결정은 겨울철 절개지 붕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강공사를 하기 위한 것이나 보강범위와 방법에 대하여 우리 구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본 바</p> <p>○판결문과 같이 건축허가취소를 정지한 것은 당초 건축허가한 사항의 효력이 회복되어 2003년 1월 30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건축허가 내용에 의거 공사하도록 한 것이며,</p>	건축과

질문의원	질 문	답 변	해당부서
심재환의원		<p>○허가취소 효력정지기간을 정한 것은 동기간 내에 구조물이 어느 정도 형성되면 붕괴위험 요소가 해소될 것이라고 사법부에서 판단한 것으로 판결내용을 임의 해석하여 허가권자인 구청 측에서 공사범위를 임의로 제한하거나 또는 공사중지를 할 수 없는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	
	<p>○연화정사 본 건물(평창동 417-6) 위법사항 및 행정조치사항은?</p>	<p>○위법사항</p> <p>①A동 지하1층 하부에 약 38.8㎡ 무단중축 창고 및 화장실로 사용</p> <p>②A동 지하1층 약 33.0㎡ 무단중축 부적으로 사용</p> <p>③B동 법당을 약 11.1㎡ 무단중축</p> <p>④지하층을 약 22.26㎡ 무단중축 (주거용 사용)</p> <p>⑤유지관리 부적절(사용승인 사항과 달리 사용)</p> <p>-담장설치로 전면 주차 불가(1대)</p> <p>-A동 1층에서 2층 출입을 위한 철계단 설치</p> <p>-A동 1층 철발코니 설치</p> <p>○시정내용</p> <p>평창동 417-6호 ④호를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완료</p> <p>○미시정에 대한 행정조치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2002. 4.12 건축주 고발 및 공사감리자 조치 의뢰 · 2002.10.11 이행강제금 부과 (3,439,800원) · 2002.10.10 건축(증축)신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평창동 417-6 : 지하층 52.95㎡ 종교집회장 -2002.12. 3 건축신고서 보완 (조정계획서) <p>○향후조치</p> <p>건축 관계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할 예정임</p>	<p>건축과</p>